

의 정 정 보

2007 - 2

2. 8

☞. 설·대보름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1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9
☞. 최근 중앙기관의 지방관련 동향	20
☞. 부록<행복한 책읽기>	29

설·대보름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 선관위특별단속기간 : 2007. 2. 8 ~ 3. 8(29일간)

① 설날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은사를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 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 · 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 보궐선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아래 항에서 같음)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날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금지됨.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설날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함.
 -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말함 (§60의3①2.).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선전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하는 행위
- ※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선훈보물·예비후보자홍보물은 무방함.
-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자료출처 : 충남선관위 관련공문]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8267호, 2007.1.27공포]

1. 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

-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학생 등에 대하여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안 제1조·제2조 및 제5조)

-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교육감은 관할 구역별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며, 외국인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3)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안 제28조·제29조 및 제32조)

- (1) 전국적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정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출연하는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
- (3)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수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제44조 및 제45조)

-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내용과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되,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또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 등에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공제자가 이 법에 의한 공제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학생·교직원 등은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함.

- (3) 공제급여의 종류·내용과 급여 제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피공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재산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책임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료의 산정기준(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 (1) 학교장 등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공제연도마다 전전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각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공제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안전공제회의 실정에 맞게 공제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안 제57조 및 제61조)

- (1)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급여의 결정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 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3) 공제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 결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제8582호, 2007.1.19공포]

1. 제정이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2조제1항)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방법(안 제5조)

부도임대주택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도록 함.

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안 제7조제1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 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라.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

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 등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8250호, 2007.1.19공포]

1. 개정이유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의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등(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제2항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 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국가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경우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안 제28조제7항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그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 단축(안 제47조제6항)

종전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

라.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변경(안 제84조제1항 및 제3항)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의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④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243호, 2007.1.19공포]

1. 개정이유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차세대의료산업에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징병검사(안 제14조의2 신설)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위원의 편입대상 확대(안 제37조제3호 신설, 안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

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학교 등록의 인정(안 제73조제2항 신설)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에 따라 대학 등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7조·제 39조 및 제 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235호, 2007.1.11공포]

1.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대상 제외주택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안 제8조제3항 신설)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함.
-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변경(안 제16조)

-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함.
-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안 제21조제6항 신설)

-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함.
- (2) 과세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232호, 2007.1.3공포]

1. 개정이유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약서의 작성 및 배부(안제66조)

-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선거공약(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 선거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 장선거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함.
- 후보자, 배우자(배우자 외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배부할 수 있으며, 호별 방문이나 살포의 방법으로 배부 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 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안 제71조제2항)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

다. 시·군·자치구의 장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안 제82조제1항)

언론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공약집의 발간 및 배부(안 제138조의2).

-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 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 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마. 교육공무원의 투표사무원 위촉(안 제147조제9항)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최근 중앙기관의 지방관련 동향

①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조정·지원 기반 구축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다수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균형발전 사업의 통합·조정·분석 기능이 미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인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지역별, 재원별, 사업별로 추진되는 균형발전 사업의 입체적인 연계·분석을 지원하는 정보관리기능 부재로 지역별 균형발전사업의 유사·중복 투자부문을 조정하기 어려우며,

※ 강원 인제군(06년) : 15개 부·처·청의 110개, 616억의 국고보조사업 시행

- 부처별, 시스템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관련 통계 및 지표·지수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미비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사업의 총괄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지난 2006년 6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정부(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전문성 및 행정 채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17억6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은

- 균특예산의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간 관련정보를 통합 화면으로 구성하여 심의·조정이 용이토록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 균형발전특별회계 14개부처 197개 사업, 일반보조금 434개 사업, 교부금(분권교부세) 176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 지역통계 및 지표·지수를 활용하여 균특사업의 기준자료 제공과 다양한 통계정보 축적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균형발전정책의 사업별 추진상황 및 결과, 평가·환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 향후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일정은

-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전략계획) 사업('07. 2~4월)과 시스템 개발·구축사업('07. 5~12월) 및 시스템 고도화('08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과 사전심사·조정 및 평가·환류 기능 제공으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 대 국민서비스 기능 제공으로 지자체별 사업효과 극대화 등 전 정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② 범정부 차원의 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 1. 26. (금) 10:00 ~ 12:00, 지방행정본부장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안내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법원과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 공시송달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민들이 말소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③ 참여정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추진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원장)는 1.29(월) 오후3시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중앙·지방 자치단체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1회 지방이양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양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 지침이 될 제4기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과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15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하여 이양 여부를 심의·의결 하였다.
- 글로벌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작성된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이양을 활성화시키며,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행·재정지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어서 심의·의결된 이양대상사무는

-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 등 8개 사무
- 노동부 소관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총 3개 사무이며, 이양결정된 사무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된 후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3기에 걸쳐 약 1,400여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결정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들어와서 847건 사무(78%)를 적극적으로 이양해 왔다.

- 243회 회의 5,622건 심의, 1,426건 이양결정, 1,087건 이양완료

○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양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④ 살기좋은 지역 특구 지정 추진

- 행정자치부는 균형발전 7대 과제로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2월 8일 우수계획으로 최종 선정되는 30개 지역을 “살기좋은 지역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 일반법에 대한 규제, 토지이용 규제, 권한이양 규제 등으로 관련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행자부와 재경부가 지원창구가 되어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한다.
- 향후, 3월 중 행자부·재경부·관련부처 합동으로 지역별 규제특례 지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별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 시, 특례사항

우수계획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을 살기좋은지역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특구지정 절차

- 시군구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신청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사업자, 토지이용계획, 규제 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

위원장(재정부장관), 부위원장(건교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 호선), 당연직 위원(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 특구지정 시, 규제특례 사항

-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운영,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 임용 가능
- 특화사업 종사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간소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국방부장관 및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간주
-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 폐지 가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
-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 일시사용 허가할 수 있는 용도지정 및 농지 전용허가 가능

- 주택법과 달리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설치,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설물 기부 등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
-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도 매시장 개설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건폐율, 용적률, 대상, 점용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가능
-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사항은 결정·지정, 허가 등의 고시 공고로 간주

도시계획의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산업단지의 지정, 초지의 전용허가,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하천·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

- 체육관련 특구에서 등록체육시설업, 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의 승인·허가 득함
- 식품 표시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행위를 제한 가능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피라니아 이야기
- 저자명 : 호아킴 데 포사다
- 출판사 : 시공사
- 출판년 : 2006년
- 페이지 : 185
- 가 격 : 9,500원

『마시멜로 이야기』가 성공을 꿈꾸게 했다면 『피라니아 이야기』는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의 직관과 소망을 믿으라는 삶의 빛나는 통찰을 들려주고 있는 이 책은 다시한번 독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저자인 호아킴 데 포사다는 전세계 30여 개국 사람들에게 성공을 향한 강한 열망을 심어주고 있는 당대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해서는 당장의 만족을 위해 지금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대한민국 독자들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두 번째로 선보이는 『피라니아 이야기』에서는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위험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나 다른 물고기를 공격하는 빈도가 드문 피라니아가 지니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성공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에게 해를 가한다는 피라니아의 치명적인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듯,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데 주목했다.

혹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꿈꾸고 직접 부딪혀 보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해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 책은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성공을 향한 도전조차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피라니아가 사는 물에서 일상적으로 수영을 하며 피라니아를 잡아먹기도 하듯,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성공을 향한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 자체가 허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피라니아의 먹이가 아니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